

민원편람

2026. 5.



법제처



목 차



I . 민원 제도 개요	1
① 민원 관련 용어 및 기본개념	1
② 민원 처리 절차	3
③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민원처리 흐름	6
II . 민원 처리 기준	7
① 법령해석	7
②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8
③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9
III . 민원 표준 사례(Q&A)	10
① 대변인실·운영지원과	10
②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혁신행정·법제교류협력)	15
③ 법제정책국(법제정책·국가기본법제)·법제조정정책관실	24
④ 법령정비국(법령정비총괄·법령정비지원·행정규칙심사정비)	41
⑤ 법제국(행정부제·경제법제·사회문화법제)	47
⑥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행정/경제1/경제2/사회문화법령해석)	50
⑦ 법제정보지원국(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제지원·법제교육)	57
⑧ 법제자문조정관실	73

I.

민원 제도 개요

1 민원 관련 용어 및 기본개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민원(법 제2조제1호)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의 종류>

종류		정의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민원인(법 제2조제2호)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 ※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으로 봄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복합민원(법 제2조제5호)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법 제2조제6호)

-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법 제5조)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민원 처리 절차

민원 처리 기간(법 제18조)

- 질의민원(영 제14조)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 건의민원(영 제15조) : 14일 이내
- 기타민원(영 제16조) : 즉시
- 고충민원(영 제17조) : 7일 이내
 -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여 보완, 이송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처리 기간의 연장(영 제21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음(총 2회 연장가능)
- * 처리기간 연장 사유
 -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연장 시에는 연장사유, 처리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 이송(법 제16조, 영 제13조)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 접수된 민원 중(법정민원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민원 서류의 보완(법 제22조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9조)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보완요구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요구)
-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

-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함.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 행정기관이 정한 보완기간 또는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 요구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법 제22조제2항)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민원서류의 반려(영 제25조제1항 및 제3항)

-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문서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민원의 종결(영 제25조제2항 및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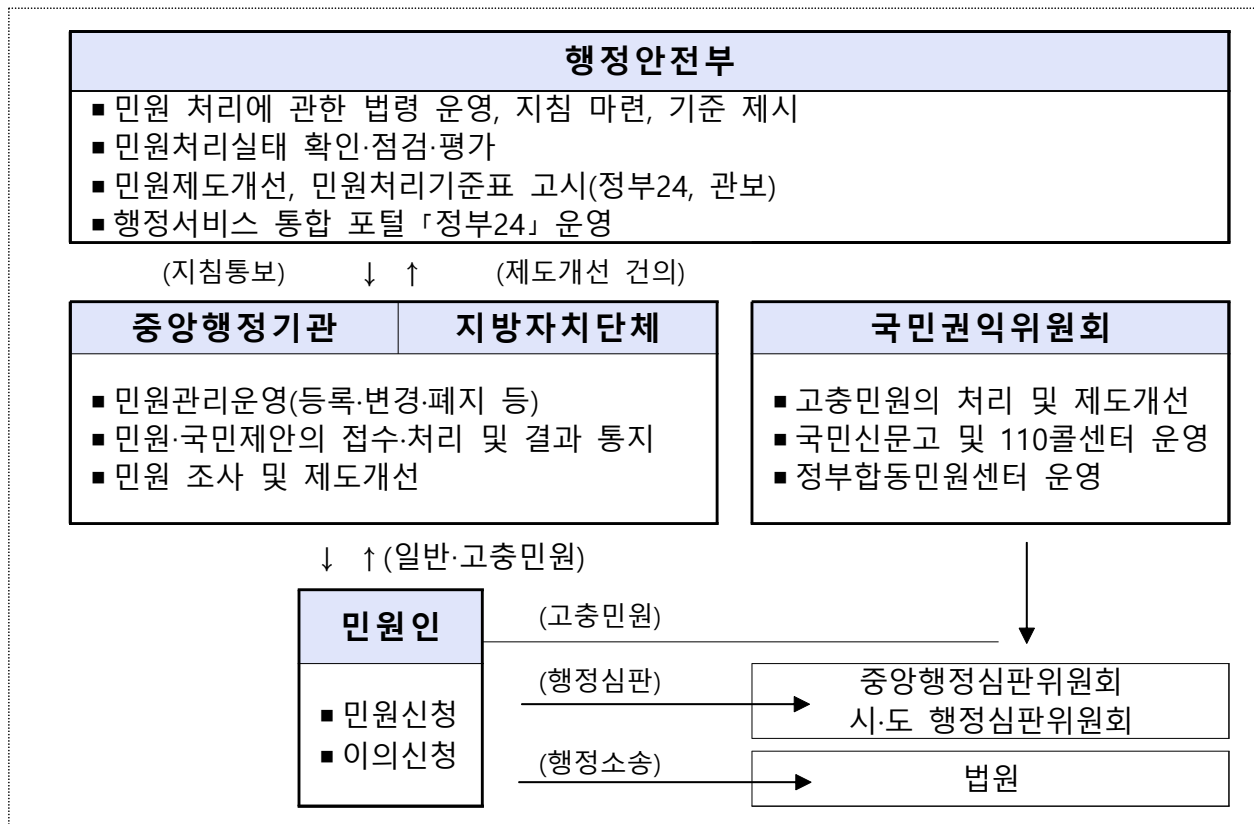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결과와 통지(법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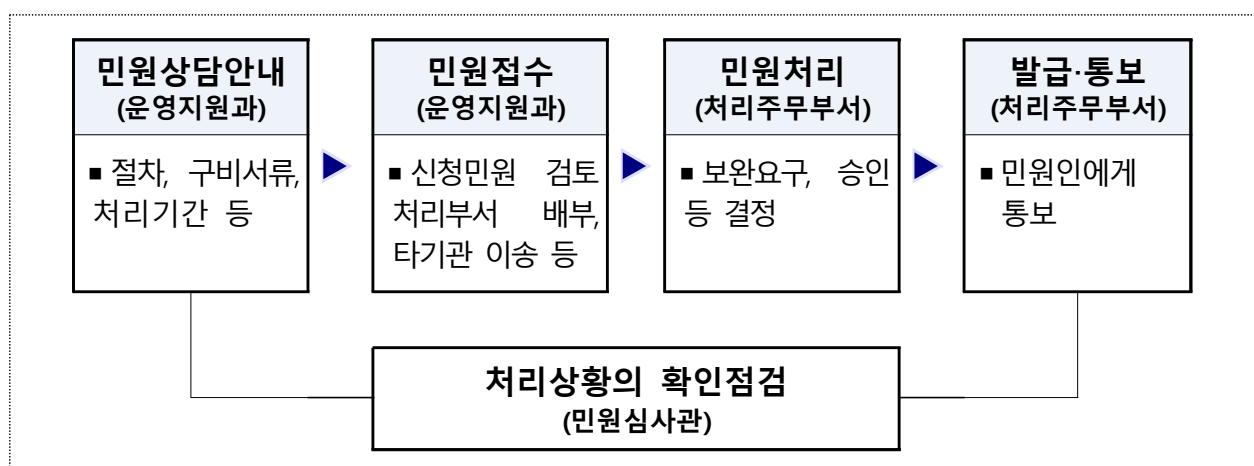
- 민원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기타민원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가능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와 통지를 할 때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정보(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함

3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민원처리의 흐름

1. 민원행정 관리체계



2. 민원처리의 흐름



II.

민원 처리 기준

1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무내용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의 의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민원인	접수처	법제처	신청방법	국민입법참여센터(온라인), 팩스, 우편
행정기관	처리과 (협조부서)	법령해석총괄과	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없음 (통상 3개월)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장		
처리과정	접수(법령해석총괄과) →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 회신			
제출서류	1. 법령해석 요청서 2.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자료			
비고 (주의 사항 등)	민원인은 먼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함.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무내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민원인	접수처	법제처	신청방법	우편
행정기관	처리과 (협조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처리기간	20일
	관련근거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 또는 반려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3.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고 (주의 사항 등)	*설립허가 기준(「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3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무내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민원인	접수처	법제처	신청방법	우편
행정기관	처리과 (협조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 또는 반려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4.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비고 (주의 사항 등)				

① 대변인실 · 운영지원과

1.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싶습니다.

<대변인실, 044-200-6520>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제처에 관심 갖고 문의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은 크게 세 종류로 주요 시행법령 등을
 만화로 구성한 『법나들이』 (매월 발간), 법제처 심사경과보고서 등 업무관련
 자료를 텍스트로 구성한 『법제소식』 (매월 발간), 다양한 법제분야의 논문을
 심사·발간하는 『법제』 (3월, 6월, 9월, 12월 발간)가 있습니다.

해당 정기 간행물은 전국 행정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있으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정기 간행물의 신규 구독을 신청하시거나 구독 이후 주소변경 또는 구독중지를
 신청하실 때에는 『법나들이』는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20), 『법제소식』 및
 『법제』는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나들이: 법제처 홈페이지>지식창고>법나들이

(http://www.moleg.go.kr/esusr/news/lpc/lpcList.es?mid=a10406000000&srch_csf_cd=800001)

○ 법제소식: 법제처 홈페이지>지식창고>법제소식

(<http://www.moleg.go.kr/legnl/legnlList.mo?mid=a10403000000>)

○ 법제: 법제처 홈페이지>지식창고>법제

(<http://www.moleg.go.kr/menu.es?mid=a10402010000>)

2. 법제처 홍보물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변인실, 044-200-6515>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제처에 관심 갖고 문의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법령정보 및 법제정책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제처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 소셜미디어 바로가기 참고

또한, 법제처 블로그 및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여 쉽게 법령 정보를 전달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가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번 달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알고 싶어요.

<대변인실, 044-200-6515>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제처에 관심 갖고 문의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매달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① 매달 법제처 브리핑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행법령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 ② 법제처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X 등)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콘텐츠(영상, 이미지, 카드뉴스 등)를 통해 최신 시행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또한, 법나들이, 법제소식 등 법제처 간행물을 통해서도 시행법령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과 시행예정 법령의 전체 목록이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이트 내 ‘법령캘린더’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가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000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운영지원과, 044-200-6523>

귀하께서는 000법률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행정 관련 법령안의 심사 또는 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률 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회에 입법의견 등을 제출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회 민원신청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46&cntsDivCd=CVA&mAgree=Y>)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회민원>민원신청

5.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주세요.

<운영지원과, 044-200-6523>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행정 관련 법령안의 심사 또는 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 110)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ecfs.scourt.go.kr ☎ 02-3480-1715)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② 기획조정관실

1.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8>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업무와 관련된 장·단기 정책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법제업무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수행 과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법제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추진한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은 과제 종료 이후 공개여부 검토를 거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지식창고-정책연구용역자료) 또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정책연구검색-기관별 검색-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제처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3>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의원입법 검토·지원 강화,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 정비,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 개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제 개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자치법제 역량강화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 및 법제업무 시스템 혁신, 법령정보 통합 제공 및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제처 소개-업무보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3>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정비, 법령해석, 법제교육 및 법제정보시스템 운영 등 그 밖의 정부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제처 감사결과를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4-200-655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정보공개-공표정보-국정감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법제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혁신 행정감사담당관, 044-200-6559>

법제처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 행위” 혹은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갑질 행위”를 한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민원·제안-부패·갑질 신고)에서 신고하거나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갑질행위**(「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법제처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제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법제처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법제처 산하기관에 법제처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한편,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민원·제안-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서 신고하거나 해당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법제처의 소극행정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4-200-6559>

법제처 소속 공무원 등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의 소극행정을 한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민원·제안 - 적극행정 - 소극행정 신고)에서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남북법제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4-200-6826>

법제처는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및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정비 사항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연구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법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남북법제 연구원을 채용하여 자체 연구를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의 법제화 및 남북법제 연구를 주제로 통일부·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학회와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북법제 연구의 촉진과 성과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참고로 북한법령과 남북법제 관련 연구결과물 등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8.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을 찾고 싶습니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4-200-6829>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 외국어 번역의 총괄 관리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기관이 번역한 법령 번역본 등을 취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법령' 카테고리에서 '외국어 번역'을 체크하신 후 법령명을 검색하시면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영문 법령은 외국인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며, 국문 법령이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 영문 번역 기준』을 공동으로 발간하여 법령 번역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령 용어 번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간행물'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 해외 진출을 위해 다른 국가의 법령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4-200-6826>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해외 법령, 입법 동향 등 세계 법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58개국 법령 2만 6천여 건의 원문, 번역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도가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분기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통해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주제별 법령체계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의 최신 법제 동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법령의 원문본, 요약본 등)를 신청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 결과물 및 관련 자료는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 법령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제정책국 · 법제조정정책관실

1.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전자관보’(gwanbo.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관보에서는 공고란을 통해 입법예고문을 신고 있으며,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뿐만 아니라 법령안 전문 및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또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한편, 2016년에 개통된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처의 담당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의견 제출자 또한 해당 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며, 해당 법률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며,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하며,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4. 법률과 법령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령은 일반적으로 법률 외에도 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 ②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법률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5.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입법 주체와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제95조)의 순서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요건(제2조제1항),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 등), 국회 등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제41조제2항·제3항,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96조,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고(제40조), 법률은 헌법의 위임 사항 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은 일정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됩니다. “행정규칙”의 정의에 대해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예규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행정규칙 중 중요한 유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등).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은 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헌법기관 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하였는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령을 만들 때 따라야 하거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요?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736>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학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의 법령·해석정보 - 정부입법 - 법령입안심사기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법률 제명 약칭은 왜 필요하고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제명이 긴 법률을 부르거나 인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제명을 줄여 쓰는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관 또는 개인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고, 음절을 지나치게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칭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길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2014년에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 심의 및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제명이 긴 법률의 약칭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정하여진 법률 제명 약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를 통하여 법률 제명 옆에 괄호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창에 약칭만을 입력하여도 관련 법률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른쪽에 있는 “그 밖의 정보” → “법률 명약칭”을 클릭하면 법률 제명 약칭의 전체 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인 『법제』에 논문을 투고하고 싶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접수받아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게재 후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법제』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고, 논문 주제는 행정법, 헌법, 세법 등 법제와 관련된 내용이면 가능합니다. 논문을 투고하려면 발간일(3, 6, 9, 12월의 각 15일경 발간) 2개월 전에 논문 게재 의향 및 논문 개요 등을 법제처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나 이메일(044-200-6564, thelegislati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논문 작성 방법 및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훈령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을 통해 새로운 법제이론의 실무 활용도 제고 및 법제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기본법제기획과, 044-200-6912>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조의 시행일(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

<국가기본법제기획과, 044-200-6912>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는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동일형식의 법률간 상·하위 관계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기본법제기획과, 044-200-6912>

「행정기본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나 처분의 효력 등 행정에 관한 ‘실체 규정’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절차, 처분 방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에서 「행정기본법」과 다릅니다.

12.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세요?

<국가기본법제기획과, 044-200-6912>

법제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21. 12.)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법 시행에 따른 행정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각 조문에 관련된 학설, 판례, 적용 사례, 관련 법적 쟁점, 국내외 입법례 등을 포괄한 책자로서, 국민 모두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법제처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해설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의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소개 > 해설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공무원들의 법 해석·적용에 관한 주요 질의 사례를 토대로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25.3.) 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의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소개 > 사례집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본법제기획과, 044-200-6912>

Q1) 취학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있나요?

A1)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학 의무에 관한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Q2) 칠순, 팔순 등은 종전에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왔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야 할까요?

A2)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Q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3)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항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4)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4) 유효합니다. 이미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항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Q5) 법령상 나이를 세는 기준 중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들 전부 '만 나이'기준으로 통일 되는 건가요?

A5)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개별 법령에서 나이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경우까지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는 2023년에 만 나이 예외규정 중 6개 법률 및 2개 대통령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예비군법 시행령」 등 개정

※ (참고) 만 나이의 예외: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

14. 의원입법 평균 처리기간, 심사 절차 및 심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8>

○ 의원입법 평균 처리기간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등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률안 소관 부처를 법리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견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법 심사 절차

의원발의 법률안은 “법률안 발의 →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상임위원회 심사(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및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공포”의 절차를 거칩니다.

○ 의원입법 심사 현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현황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 접속 후, 의안검색 → 의안명, 발의자 등 검색조건 입력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면, 의안 접수정보, 위원회 심사정보, 본회의 심의정보와 같은 국회 심사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5. 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입법예고 기간 내)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8>

귀하께서는 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으나, 이는 국회에 제출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입법예고('00. 00. 00. ~ 00. 00.)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을 통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해당 법률안 명(예: 국민건강증진법) 검색 → 해당 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버튼 클릭 →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 의견작성 및 등록)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 내용 및 국회 통과 여부 등은 국회의 입법권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6. 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8>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본회의 상정·의결” 등 여러 단계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고 있는바, 국회에서조차도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일로, 법제처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령정비국

1. 법령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정비총괄과, 044-200-6737>

법제처의 법령정비사업은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접수된 개선의견을 검토·연구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법제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편 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은 내부 검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 발굴·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령정비지원과, 044-200-6855>

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은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 오프라인 서면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관련 법령명 및 조문, 제안이유, 개선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불편법령 개선의견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정비지원과, 044-200-6855>

법제처로 접수된 불편법령 개선의견은 1차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내부검토 결과, 해당 법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개선의견 수용 여부 및 정비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는데 특히, 정책적 판단, 예산 집행 등이 수반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정비과제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협의 결과, 소관 부처에서 법령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면 이를 법령정비과제로 채택하고 개정 완료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령정비지원과, 044-200-657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화되기 전에 이를 사전 차단하고, 이미 법령화된 용어는 사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법 등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고,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서비스 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 → 법령 제명 상단 탭 중 ‘한눈보기’ 클릭 → ‘한눈보기 서비스 제공 조문’ 목록 또는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문구 클릭

5. 행정규칙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행정규칙심사정비팀, 044-200-6940>

대법원 판례에서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입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참조).

6.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나요?

<행정규칙심사정비팀, 044-200-6940>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내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등에 따라 법령과 맞지 않거나 모순·충돌되는 사항,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 기타 법체계나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찾아서 부처에 의견을 보내 정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법제국(행정·경제·사회문화)

1. 법령안의 정책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제국, 044-200-6606>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각 부 장관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제처는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즉, 법제처는 해당 법령안이 법적인 관점에서 형식과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법령안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법령안의 정책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정책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서 법령 소관 부처 등 법령안 주관기관이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에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전반적인 정책 결정 사항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후 해당부처가 결정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내용의 정당성을 검토할 때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충실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안이 심사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법제국, 044-200-6655>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각 부 장관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부 장관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안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거나,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시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여 주신 해당 법령안이 현재 입법 진행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사를 하여 알려 드리며, 추후 법령안이 접수되는 경우 법령심사를 가능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사회문화법제국, 044-200-6688>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각 부 장관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 장관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법령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각 부 등 법령안 주관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령안에 반영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를 대신하여 법제처는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각 부 등 법령안 주관기관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신 의견의 내용을 통지하겠습니다.

추후 각 부 등 법령안 주관기관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바에 따라 법령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법령해석국

1.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하며, 그 법령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 자료 이외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 정보 - 법령해석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민참여 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법령해석 메뉴 - 법령해석 요청 메뉴)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였는데 반려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반려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해석 대상 법령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가 제시된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같은 경우 (단순히 확인을 위한 해석은 불가)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 조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질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반려합니다.
- 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한정되는 바,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관한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반려합니다.
- 법제처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법령이 제한되어 있는바, 다음의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합니다.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의 되는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치조항)에 대하여 해석 요청하는 경우
- 기존의 법령해석례가 있거나,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 특정 법령 조문의 의미에 관한 대립되는 해석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특정 상황이 특정 법령 조문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령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반려합니다.
-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반려합니다.
-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고,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책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요청으로 보아 반려합니다.
-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반려합니다.
-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3.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민원인의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국민신문고, 서신 등을 통해 법령질의를 하고 문서로 회신을 받으면 됩니다.

서신을 통한 방법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회신을 받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지침, 편람 및 보도자료,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녹취록 등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질의를 하여 회신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해석 요청이 불가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4. 행정기관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원의 판결 등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거나 감사원의 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법령해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1. 법령해석 안건 접수(법령해석총괄과)

-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사안은 법령해석총괄과에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았는지와 법령해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반려 사유가 없으면 법령해석 안건으로 접수합니다.

2. 법령해석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법령해석 안건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의견 확인, 관련 해석례·판례, 행정법 이론 및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검토 과정에서 반려 사유에 해당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합니다.

4.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법령해석 안건은 결재를 거쳐 법령해석 요청자에게 회신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하는 때에는 법령집행의 혼선이 없도록 그 회신 내용을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6. 2005년 이전 해석례는 제공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현재와 같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해석을 회신하는 절차는 법령해석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신설된 2005년 이후부터입니다.

2005년 이전 해석례는 법제심사부서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자문형식으로 답변한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없어 2005년 이전 해석례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법제정보지원국

1. 생활법령정보를 강의 교재 등 교육자료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법령정보총괄과, 044-200-6792>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간 관계를 일상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므로 교육자료 등에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 내용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령을 검색하던 중 법령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령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제명 우측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위법공포내용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3, 3764

제1장 총칙

관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 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국 1. "대지(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냉방 소화(消火)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 설비, 굴욕,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홈페이지 첫 화면의 검색창에 현행법령검색으로 선택하시고, 법령을 입력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로 자동 연계되어 원하시는 법령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되어 법령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정보혁신 보다 나은 정부

현행법령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어린이 법제처 ENG

법제업무정보 | 정보공개 | 지식창고 | 뉴스·소식 | 민원·제안 | 법제처 소개

2020-01-3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 질병관리본부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더보기 ▾

행정의 사용설명서 행정기본법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재미있는 법령정보 여기로 오세요! HERELAW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입법예고

- [법제교육과] 2020년 2월 교육 과정 전면 취소 알림 2020-02-03
- [법제처 공고 제2020-15]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0-01-31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20-14호] 공유경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 연구 2020-01-31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20-13호] 결격사유와 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정비방안 연구 2020-01-31
- [법제처 공고 제2020-12]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0-01-30

알림판

2019년 법제처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 내부청렴도 2등급 · 정책고객평가 2등급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선례를 검색하고 싶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기관,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결정선례 통합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분산 자료를 수집·연계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첫 화면에서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 후 “중앙부처 1차 해석”, “위원회 결정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메뉴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law.go.kr).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nd 'WAS' (Web Access System). The main menu is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법령' (Laws),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별표·서식' (Annexes/Forms), '자치법규' (Local Regulations), '판례·해석례등' (Cases/Interpretations),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cision Precedents), and '그밖의 정보' (Other Information). The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main menu, there are sections for '기관별 찾기' (Find by Agency), '법분야별 찾기' (Find by Legal Field), '최신법령' (Latest Laws), '자치법규' (Local Regulations),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판례' (Cases), and '한눈보기' (Quick View). The '최신법령' section lists recent laws, including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10·29 Itaewon Tragedy Victim Rights Protection and Truth Finding...). The '한눈보기' section provides a quick overview of the latest laws, including '8 개인정보 보호법' (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Regulations), '10 상법' (10 Commercial Code), and '1 산업안전보건법' (1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a copyright notice, and a link to the '국가법령정보센터'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5. 조례·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규칙의 “시행”이란 조례·규칙이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므로,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②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포한 날” 또는 “공포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자치법규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공포란 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로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대구고법 1974. 10. 10., 72노 244)한 바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70. 7. 21., 70누76)하고 있습니다.

6.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 개정 가능 여부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자치법규 전체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비록 조례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조례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7. 법 시행 후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조례의 소급효 문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 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되었음에도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과 같은 날로 정할 수 없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8.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해석 요청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법제처에서는 조례·규칙 및 행정규칙(훈령·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부득이 귀하의 질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자치입법의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바, 질의하신 자치입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나 지방의회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자치입법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또는 자치입법지원을 하는바, 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법제처가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없음에도 특정 조례의 제정 가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치입법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장의 자치입법의 참여 주체에 한정하여, 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례의 제정 가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 그 외의 민원인 등의 의견제시 요청에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의 목적상 부득이 귀하의 질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자치법규의 종류와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자치법규는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규칙(「지방자치법」 제83조)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자치법규 상호 간에서는 조례의 위임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은 조례 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공간적 효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법규가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한계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예컨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 또한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의 경우,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1. 업무에 바빠 강의를 수강하러가기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과 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위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닝 법제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닝 수요 급증 시 공무원으로 교육대상이 한정될 수 있음

교육 수강을 원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http://moleg.nhi.go.kr>)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닝 법제교육 과목 현황>

연번	과 목 명	연번	과 목 명
1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총칙)	13	사례로 보는 규제 법령 정비
2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14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3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해석사례	15	행정규칙 입안·정비 길잡이
4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의견제시 사례	16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5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절차법	17	법령 입안 길라잡이 I
6	행정기본법 해설	18	법령 입안 길라잡이 II
7	법제업무 운영규정	19	행정쟁송 실무
8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초 법(물권법)
9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중앙)	21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초 법(채권법)
10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지방)	22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초 법 (친족·상속법)
1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3	헌법과 법제
12	자치법규 입안실무	-	-

12. 공무원이 아니어도 법제처 이러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전문성 등 공직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러닝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이러닝 법제교육 수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닝 수요 급증 시 공무원으로 교육대상이 한정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헌법과 법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 공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법제교육시스템 [소통마당]→[열린 법제교육]에 접속 후 해당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닝 법제교육 과목 현황>

연번	과 목 명
1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2.0
2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3	행정규칙 입안 및 정비사례
4	헌법강의: 헌법과 법제
5	헌법강의: 간추린 헌법과 법제

13.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제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그 밖에 교육과정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월별 교육과정 실시계획을 매달 초 교육 대상 기관에 공문으로 알리고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법제업무 담당자 교육, 시·도 순회교육(찾아가는 시·군·구 순회교육 포함),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및 기초법학교육, 법령해석과정·법령입안과정, 교원을 위한 방학특강 등 수준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로스쿨 실무수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제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외에도 연중 상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자는 법제처 이러닝 교육센터(<http://moleg.nhi.go.kr>)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법제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법제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그 밖에 교육과정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월별 교육과정 실시계획을 매달 초 교육 대상 기관에 공문으로 알리고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강 희망자는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서 교육일정 계획을 확인하여 개인별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교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까지 법제교육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15. 법제처의 연간 법제교육과정은 어떻게 수립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됩니까?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과정 및 실무과정 등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제교육과정은 전년도에 운영실적 및 교육수요를 기초로 수립합니다. 해당연도의 법제교육과정은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 [교육신청]→[연간교육일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법제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재를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교육과, 041-924-1712>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과정 및 실무과정 등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과정 교육 수강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 [소통마당]→[자료실]에 교재 파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필요한 분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제자문조정관실

1.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제자문2조정관실, 044-200-6892>

부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안을 입안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실무자는 처음으로 입안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안 과정이 장기화되고, 법제처 심사 과정에 와서야 법리적 쟁점이 발견되어 법령안을 다시 입안하고 재입법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제처는 2011년부터 부처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현안과제 등 주요 정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